

양봉용 벌꿀·화분 수입허용 조건, 검역 방법 및 기준(제34조 관련)

1. 적용 대상 : 양봉농가에서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 벌꿀 (벌꿀이 함유된 제품 포함)·화분(꿀벌이 생산한 것에 한하며, 화분이 함유된 제품 포함)(이하 ‘양봉산물’ 이라 한다.)
2. 수입허용 조건
 - 가.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.
 - 1)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50km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 (Acarapis spp., Varroa spp., Tropilaelaps spp. 등)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.
 - 2)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10km이내에 미국부저병(American foulbrood), 유럽부저병(European foulbrood), 노제마증(Nosemosis), 백묵병(Chalkbrood disease), 낭충봉아부패병(Sacbrood) 및 꿀벌 마비증(Bee paralysis)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.
 - 3)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양봉장으로부터 꿀벌, 꿀벌 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.
 - 나. 양봉산물은 애벌레·번데기·성충(죽은 벌 포함)과 벌의 기생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.
 - 다. 양봉산물은 선적 전 7일 동안 살아있는 꿀벌과 접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.
 - 라. 양봉산물은 멸균처리된 기밀성 있는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.
 - 마. 양봉산물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·등록된 방사선조사 처리 시설(이하 "소독시설")에서 60Co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또는 10MeV이하에서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하여 15kGy의 흡수선량으로 처리하고 방사선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(indicator)가 부착되어야 한다.
 - 바. 방사선조사 처리를 실시한 양봉산물은 해당 소독시설의 업체명·승인번호·소재지·허가·등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 - 사.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양봉산물의 소독시설은 수출국 정부의 허가·등록을 받은 곳으로 수출업체로 승인한 곳이어야 하며, 수출하기 전에 대한

민국 검역당국으로 해당시설(업체명, 승인번호, 소재지, 허가·등록번호)을 통보하여야 한다. 필요시 대한민국은 해당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.

3. 방사선조사 처리 여부에 따른 수입허용 조건 준수 및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

- 가. 방사선조사 미처리 양봉산물: 2호 수입허용 조건 중 가·나·다·라 목을 준수하고 해당 목에 명시된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
- 나. 방사선조사 처리 양봉산물: 2호 수입허용 조건 중 다·라·마·바·사 목을 준수하고 다·라·마·바 목에 명시된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

4. 검역방법 및 기준

- 가. 검역 장소 : 보세장치장(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포함) 또는 검역창고
- 나. 서류 검사

1) 역학조사

- 가) 수출검역증명서 기재 사항 확인
- 나) 수입 허용조건 준수 여부 확인

2) 소독 내역 및 시설 확인 (3호 나목에 한함)

- 가) 방사선조사 처리 내역 확인
- 나) 소독시설의 업체명, 승인번호, 소재지, 허가·등록 사항 확인

다. 현물검사

- 1) 검사수량 : 검역신청건별/컨테이너별 포장 수량 기준 1% 이상

2) 검사요령

- 가) 성상 및 부패 여부 등 현물검사 실시
- 나) 애벌레·번데기·성충(죽은 벌 포함)과 벌 기생충 등의 포함 여부 확인(3호 가목에 한함)
- 다) 방사선 조사 표시 확인(3호 나목에 한함)

라. 정밀검사

- 1) 검사기관 :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
- 2) 검사대상 : 3호 가목에 한함
- 3) 검사방법

대상 질병명	검 사 방 법	검사요령
부저병(미국, 유럽)	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	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
기생성응애류	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	
석 고 병	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	
백 목 병	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	
낭충봉아부패병	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	

4) 시료채취 요령

가) 시료종류 : 양봉산물(벌꿀, 화분)

나) 채취용기 : 멸균된 종이, 포장 등 사용

다) 채취방법 : 검역신청건별/컨테이너별 5개 무작위 채취

라) 시료 채취량 : 5개(50g 이상/개)

5. 불합격품 처리 기준

- 현물검사 결과, 성상에 이상이 있거나 부패가 있을 경우 해당 포장단위 물품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
- 수출검역증명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
- 3호 가목에 해당되는 제품 중 현물검사 결과, 애벌레·번데기·성충(죽은 벌 포함), 벌 기생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
 - 정밀검사 결과,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
- 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제품 중 2호 마목의 소독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